

국 민 안 전 처

주 의 요 구

제 목 ○○○ 수해복구공사 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기장군

내 용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, 이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2015년 집중호우로 인해 ○○○에 재해가 발생하자 【표 1】 과 같이 ○○○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였다.

【표 1】 기장군 ○○○ 수해복구공사 현황

사업기간	사업비(백만원)			주요사업 내용	도급자	비고
	계	국비	지방비			
'15.3 ~ '16.6	24,737	12,369	12,367	호안정비 및 교량건설	(주)○○건설	

※ 자료 :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출자료 재구성

1. 낙찰 잔액을 이용한 불필요한 설계 변경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3장 공사계약 일반

조건의 제6절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·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설계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러나 기장군에서는 ○○○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이러한 설계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낙찰차액으로 부당하게 설계를 변경하였다.

- ① 유수의 흐름이 적어 어류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어도 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어도를 추가로 설치
- ② 「하천설계기준·해설(국토부 고시)」 제24장 호안편에 의하면 비탈덮기(호안)의 높이는 계획 홍수위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초 설계에도 홍수위 상단을 줄때붙이기 공법(5,726원/㎡)으로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고가의 자연석 쌓기(146,074원/㎡, 25배)로 설계 변경
- ③ 민원에 의해서 징검다리를 추가로 설치하였다고 하였으나 민원이 있었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사람의 통행이 없는 지역임에도 징검다리를 추가 설치하는 등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85,000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.

【그림 1】 예산낭비 사례





【표 2】 불필요한 설계 변경으로 예산낭비 현황

설계 변경 내용	세부 내용	금액(천원)	비고
계		85,000	
홍수위 상단부분 자연석 추가설치	H = 80cm, L = 539m	64,000	
어도시설 설치	1개소	2,000	
징검다리 설치	2개소	19,000	

2. 하자검사 미실시로 인한 하자발생 구간 방치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해야 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그러나 ○○○ 공사 후 [그림2]와 같이 ○○○ 0공구 내 하천보 하단이 세굴됨으로써 이격이 발생하여 집중 호우 시 2차 재해피해가 예상됨에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하자보수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였다.

【그림 2】 하자발생 구간 방치 사례



조치할 사항 기장군수는

[주의] 향후 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여 주시고 하자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